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1059

제안연월일 : 2013. 12.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가. 의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록 공개나 방청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회의 중계방송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며,

나. 회의운영상 미흡한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와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은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의안은 교육위원장이 이송하도록 함(안 제32조)

다. 의원이나 공무원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토론을 포함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각·언어 및 절단장애 의원 등의 발언시간은 추가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라. 5분 자유발언은 신청서 제출 순으로 6명까지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되, 6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마. 위원회 중심의 의회운영을 위하여 본회의에 있어서의 원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원안으로 보도록 함(안 제48조)

바. 회의록 기재사항 중 각종 보고서와 참고문서 등은 부록으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50조)

사. 자구정정 요구는 임시회의록이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회의록 내용은 삭제를 금지하며, 자구정정이나 취소발언 내용까지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52조)

아.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자. 위원회에서 의원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 외에도 일괄질의도 허용함(안 제59조)

차. 시정질문은 5가지 방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두가지 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방식은 병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73조의2)

카.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를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계방송은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88조의2)

타. 중계방송은 본회의, 위원회 회의, 공청회 등을 대상으로 하되, 시민 관심사항은 우선적으로 중계방송을 하도록 하고, 영상자료는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없도록 함. 다만,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간은 편집을 허용함(안 제88조의3)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6쪽)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별첨(11쪽)

다. 비용추계서 : 별첨(16쪽)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제15호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5.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

16. 본회의가 요구하는 위원회 개회

제3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이송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제1항 중 “의원 및 공무원의 발언시간”을 “의원 및 공무원의 발언(토론을 포함한다) 시간”으로 하고,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③ 의장은 발언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각이나 언어장애 또는 절단장애 등을 가진 의원이 발언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1.5배 이내에서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의장은 5분 자유발언신청서 제출 순으로 발언을 허가하되 , 신청의원이 6명을 초과하는 경우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의원 수와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별로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수개”를 “여러 개”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최후의”를 “최후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정안 보다”를 수정안보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개

있을 때에는"을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간주하여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

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의록 기재사항 중 각종 보고서와 참고문서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52조제1항 중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를 "임시회의록이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위임규정) 회의록의 작성과 발간, 배부와 보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회수"를 "횟수"로 하고, "제한없이"를 "제한 없이"로 하며, "의결한 때는"을 "의결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문1답"을 "일문일답이나 일괄질의"로 한다.

제7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서면질문·구두답변"을 "일괄질문·답변과 서면질문 구두답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②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일괄질문・답변, 일괄질문 서면답변, 서면질문 구두답변, 서면질문・답변 방식으로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병행하여 할 수 있으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일괄질문, 서면질문 순으로 한다. 다만,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방식은 병행할 수 없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확보액 범위에서 의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비공개 회의를 제외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또는 중계방송 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시정연설을 포함한다),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공청회, 중요 안건의 심의 등은 우선적으로 중계방송을 하여야 한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없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안건심의)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원회 심사나 보고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처리한다. 1. ~ 14. (생략) 15. 본회의 투표지 공개 16. 위원회 개회 요구 17. ~ 20. (생략)	**제29조(안건심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14. (현행과 같음) 15.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 16. 본회의가 요구하는 위원회 개회 17. ~ 20. (생략)
제32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단서 신설>	**제32조(의안의 이송)** ----------.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이송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 및 공무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 시정연설, 외빈 및 외국명사의 연설은 예외로 한다. ②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 2006-10-23> <신설>	**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 및 공무원의 발언(토론을 포함한다) 시간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발언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각이나 언어장애 또는 절단장애 등을 가진 의원이 발언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1.5배 이내에서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④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④ ---------- 범위 ----------.
제38조의2(5분 자유발언) ① ~ ③ (생략) ④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8조의2(5분 자유발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5분 자유발언신청서 제출 순으로 발언을 허가하되, 신청의원이 6명을 초과하는 경우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의원 수와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별로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8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의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 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단서 신설>	**제48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 여러 개 ----------각 호 ----------. 1. 최후로 ----------. 2. ---------- 수정안보다 ----------. 3. ------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 ② ----------. 다만,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간주하여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0조(회의록의 작성) ① ~ ② (생략)	**제50조(회의록의 작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회의록 기재사항 중 각종 보고서와 참고문서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 임시회의록이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신설>	**제53조의2(위임규정)** 회의록의 작성과 발간, 배부와 보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위원의 발언)** ① -------- 회수 -------- 제한 없이 -------- 의결한 경우에는----------.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 일문일답이나 일괄질의 ------.

현 행	개 정 안
제73조의2(시정질문) ① (생략)	**제73조의2(시정질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이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 우선한다.	②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일괄질문·답변, 일괄질문 서면답변, 서면질문 구두답변, 서면질문·답변 방식으로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병행하여 할 수 있으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일괄질문, 서면질문 순으로 한다. 다만,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방식은 병행할 수 없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서면질문·구두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일괄질문·답변과 서면질문 구두답변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의장은 효율적인 질문을 위하여 의원이 일괄질문·서면답변이나 서면질문·구두답변을 병행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⑦ <삭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88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확보액 범위에서 의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비공개 회의를 제외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또는 중계방송 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제88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시정연설을 포함한다),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공청회, 중요 안건의 심의 등은 우선적으로 중계방송을 하여야 한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없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43조(의회규칙) ○ 제61조(위원회의 개회) ○ 제65조(회의의 공개 등) ○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 제71조(회의규칙) ○ 제72조(회의록) ○ 제121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57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11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 제14조(의안의 이송 등) “세부사항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1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7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통고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요구하면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起債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미리 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제14조(의안의 이송 등) ①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 중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동시에 시·도의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의장은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본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의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이를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된 의안 중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④ 조례안의 재의요구 및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위원회 회의 녹화중계를 위한 비용발생
- 회의규칙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 신설 관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현재 운용중인 아날로그 방식에 의한 상임위원회 회의 녹화중계 비용을 산출

나. 추계 결과

- 1차년도는 2,200만원 소요(저장장치 구입비 1,500만원 포함)
- 2차년도 이후 매년 고정비 700만원 소요

다. 비용산출 내역

- 저장장치 구입비 : 1차년도 1,500만원(300만원 X 5대)
  - ·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을 외부 기억매체에 저장하기 위한 장치
  - · 저장장치의 외장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DVD영상을 기초로 하여 인터넷 영상 제작

- 인터넷용 영상 제작비 : 매년 700만원 소요
  - · 연간 300여 편 정도의 상임위원회 인터넷 방송용 영상 제작
  - · 인터넷을 통하여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화질, 크기 조정

※ 추가비용 발생요인 : HD방송장비 설치(1억원 × 6개 위원회 = 6억원)

· 2012년 12월말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영상 품질 등을 고려하여 향후 고화질(High Definition) 방송으로 전환 필요

라. 재원조달방안 : 전액 일반회계 세출예산(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4)	2차년도 (2015)	3차년도 (2016)	4차년도 (2017)	5차년도 (2018)
일반 회계 세출 예산	**계**		**5,000**	**2,200**	**700**	**700**	**700**	**700**
	고정비(매년)		3,500	700	700	700	700	700
	초기 투자비 (1차년도)		1,500	1,500	-	-	-	-
		저장장치	1,500	1,500	-	-	-	-

※ 향후 추가비용 : HD방송장비 설치비 약 6억원 소요예정

4. 작성자

시의회 총무담당관 김 희 식